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자산운용㈜

2. 조치일 : 2026. 8. 31.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 개선사항 1건
임 원	· 해당사항 없음
직 원 등	· 해당사항 없음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투자신탁의 분배금 지급 관련 집합투자규약 보완 필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금전을 분배하여야 하고, 관련 집합투자규약의 내용은 투자자로 하여금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회사')은 검사대상 기간 중 '미래에셋TIGER미국AI빅테크10타겟데일리커버드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등 9개 커버드콜 ETF를 운용하면서 투자자에게 매월 15일 또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ETF의 투자대상 자산인 주식,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과 콜옵션 프리미엄 등을 재원으로 한 분배금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커버드콜 ETF 집합투자규약의 제31조(이익분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한다고 정하면서, 제32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에서는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 회사는 콜옵션 프리미엄 등을 재원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므로 연간 회계결산에 따른 이익금 분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 분배를 유보한다는 뜻을 집합투자규약 제31조에 기술하였다고 설명

콜옵션 프리미엄 등이 분배대상이 아닌 것으로 투자자에게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집합투자규약 만으로는 콜옵션 프리미엄 등이 연간 회계결산에 따른 정기 이익금 분배에서 제외되고 동 재원이 매월 분배금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 동 상품의 투자설명서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 및 콜옵션 매도를 통한 프리미엄 등을 분배 재원으로 하여 매월 분배를 할 수 있으나,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 분배 재원의 감소로 의도했던 수익구조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고 안내됨

< 조치할 사항 >

커버드콜 ETF처럼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특정 현금흐름을 기초로 정기적인 분배금을 지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정기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은 연간 회계결산에 따른 정기 이익금 분배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합투자규약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